

<붙임1>

검사결과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서

본 조치예정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, 금융감독원장 결재,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외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당사자	성명(명칭)	(주)오마이갯대부			
	주 소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, 테크노마트21 3412호 (구의동)			
2.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	<p>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도</p> <p>(주)오마이갯대부는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되어 금융위원회가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(2021.3.5.,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66호)를 하였으나 공고만료일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</p> <p>⇒ 위 귀책사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기한 내에 소재확인을 위한 통보를 아니한 책임이 있음</p>				
3. 조치예정 내용	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조치 건의				
4. 관련 법 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2항 -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 -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17조제1항 				
5. 의견제출방법	제출처	기관명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	담당검사역	최영식
		주 소	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(여의도동 27번지)	전화번호	02-3145-7409
		전자우편주소	ysik@fss.or.kr	모사전송	02-3145-7396
		기 한	2021년 6월 14일까지		

※ 유의사항

- 가. 본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(고지)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, 「금융기관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3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
- 나. 위의 조치예정내용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, 금융감독원장 결재, 금융위원회의결 등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조치예정내용
 - 기관 및 임직원 제재

구 분	종 류
기관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업 인가·허가 또는 등록 취소 ○ 영업·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○ 영업점의 폐쇄, 영업점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
임원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임요구, 해임권고, 개선 ○ 업무집행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○ 문책경고
직원제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직 ○ 정직 ○ 감봉

- 과태료
 -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부과
- 자율처리 필요사항
 - 직원의 위법·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
-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
 -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14조제4항 및 동 시행세칙 제51조 제4호, 제64조제2항에 근거한 사실의 통지임
- 조치생략
 - 이미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제재 이전에 발생한 별개의 위법·부당행위가 추가 발견되는 경우 종전 제재시 함께 제재하였더라도 제재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조치생략
- 라.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또한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7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대상·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편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처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검사역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바.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(제재심의위원회) 또는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불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제재심의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출석 의견 진술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」 제59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처에 신청하여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안 등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사. 금융감독원은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사국 직원의 배석 없이 진술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아.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예정내용 및 배포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(예 : 목요일 개최시 월요일까지)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자.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